

「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」 소상공인 모집공고

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「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4월 27일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

1

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
- 사업목적 :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채널 진출지원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안정적 판로 구축 및 매출 확대 지원
- 지원대상 : 소상공인
 - * 단, [별첨] '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업종'은 신청 불가 (8~9p)
- 지원규모 : 방송지원 280개사 및 홈쇼핑 입점상담회 120개사
 - * 방송지원과 입점상담회는 중복지원 가능
- 사업기간 : 선정일 ~ '25. 12. 31까지
- 추진일정

지원사업 신청·접수	평가 및 선정	사업 추진
4/27~, 수시	5월 중순~, 수시	5월~, 수시
한유원	홈쇼핑사(수행기관) 및 한유원	홈쇼핑사(수행기관) ↔ 참여기업

*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참여기업 부담금 : (TV) 3,400,000원 / (데이터) 2,725,000원

(단위: 개사, 원)

구분	지원 기업수	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		부가가치세	
		정부보조금(80%)	자부담금 (20%)			
방송 지원	TV(라이브)	120	17,000,000	13,600,000	3,400,000	1,700,000
	데이터	160	13,625,000	10,900,000	2,725,000	1,362,500

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** 입점상담회 참여(120개사)는 소상공인 자부담금 없음

□ 지원내용 : 홈쇼핑 채널 입점을 통한 방송 판매 및 컨설팅 지원

* 홈쇼핑 채널 : (TV(라이브)) NS홈쇼핑, 홈앤쇼핑, 공영홈쇼핑
(데이터) NS SHOP+, 현대홈쇼핑PLUS#, SK스토아

** 방송지원과 입점상담회는 중복 신청·선정 가능

○ (방송지원) TV홈쇼핑 또는 데이터홈쇼핑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

- 방송 2회(본방송 1회+재방송 1회) 송출·판매 지원

- 지원사업을 통한 방송 시, 판매수수료 인하 지원(최대 15%)

* 판매수수료는 홈쇼핑사별로 상이하며, '판판대로' 본 사업 신청페이지 참조

○ (입점상담회) 홈쇼핑 입점을 위한 컨설팅(상품성, QA, 입점절차 등) 진행 및 방송으로 연계지원 가능한 우수 소상공인 상품 발굴

- 현직 MD와 소상공인의 1:1 매칭으로 상품의 시장성, 입점전략 등 컨설팅

- 소상공인 1개사당 3개 홈쇼핑사 매칭 및 회당 30분간 상담 기회 지원

□ 평가항목 : 정성평가(100점) 및 정량평가(최대 5점) 항목 / 총 105점

○ (정성평가) 상품성(25점), 시연성(25점), 가격적정성(25점), 상품구성(25점)

* 동점자의 경우, 상품성>시연성>가격적정성>상품구성순으로 고득점한 자를 선정

○ (정량평가) 가점

* 가점서류는 [3. 신청 및 접수] 우대사항 참조(6p)

○ (소상공인 선정평가표)

**「0000년 제 차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」
소상공인 선정위원회 평가표**

평가위원 : _____ (서명)

구 분	업 체 명	평 가 항 목				가점 여부 (5점)	총 점 (105점)
		상품성 (25점)	시연성 (25점)	가격 적정성 (25점)	상품구성 (25점)		

< 참고 >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상품성 (25점)	상품 품질의 우수성, 실용성	25	21	17	13	9
시연성 (25점)	방송 중 표현, 시연의 적합성	25	21	17	13	9
가격적정성 (25점)	유사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	25	21	17	13	9
상품구성 (25점)	상품구성의 홈쇼핑 방송 적합도	25	21	17	13	9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5점				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- 지원대상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

<지원 제외대상>

구 분	내 용
제외 업종	○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, [별첨] 참조
휴·폐업 및 부도	○ 대표자(기업)가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세금 체납	○ 대표자(기업)의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참여 제한	○ 대표자(기업)의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제외 품목	○ 해외 수입제품, 대기업 제품 * 단,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

3

신청 및 접수

- 신청 기간 : '26. 4. 27.(월) ~, 수시
*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- 신청 방법 : ①판판대로* '통합기업 회원가입' → ②지원사업 신청 → ③지원사업 공고 → ④'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지원' 사업 신청
* 판판대로 사이트 : <https://fanfandaero.kr>

□ 제출서류

구 분	내 용	발급처
① 사업자등록증명원	·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	국세청 홈택스
② 소상공인확인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(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)	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
③ 국세납세증명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· 완납증명서여야 인정(체납사실 기재본 불인정)	국세청 홈택스
④ 지방세납세증명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· 완납증명서여야 인정(체납사실 기재본 불인정)	정부24
⑤ 상품기술서	· 본 사업 신청 공고문에 첨부된 상품기술서 양식만 인정	사업 신청 공고문 양식
⑥ OEM증명서	·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(해외ODM 불인정)	

* 유효기간 예시 : 사업신청일이 3월1일인 경우, 유효기간이 3월1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

** 사업 신청 시, 정보제공동의 기업에 한하여 일부 서류(사업자등록증명원, 소상공인 확인서 등) 자료연계 가능

*** 가점서류는 [3. 신청 및 접수] 우대사항 참조(6p)

<참고.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>

○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
'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'만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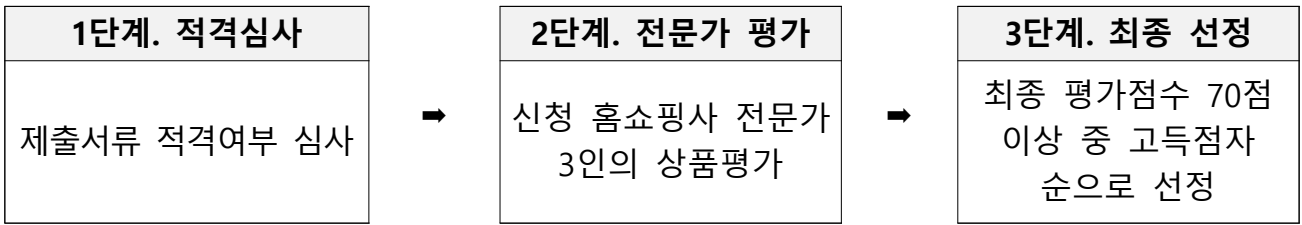
-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
- '소기업(소상공인)'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
- 확인서 발급 :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 접속
(URL : <https://sminfo.mss.go.kr/>)

* 발급문의처

-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- ② 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-6508



□ 선정 절차



□ 우대사항

- 가점부여 :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(최대 5점 내에서 적용)

해당 사항	비 고
①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	해당 시 +5점
② '23~'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- 문체부 관광기념품 공모전 -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	
③ '25년 우수 특구(탁월·우수 등급)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	
④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(coop.go.kr)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	
⑤ '24~'26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기업	
⑥ '25~'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(TOPS) 2단계 진출 소상공인	
⑦ 모두의 창업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	
⑧ '23~'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	해당 시 +3점

*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

4

유의사항 및 문의처

□ 유의사항

< 자부담 납부 유의사항 >

※ 본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,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**2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**해야 합니다.

* 자부담금은 홈쇼핑사(수행기관)로 납부(홈쇼핑사(수행기관)-소상공인 개별 계약 체결 필요)

**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음

※ 자부담금 기한 내 미납 시 지원사업에 탈락 처리되며, 다음 모집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.(단,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)

- 본 사업은 메뉴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, 유의부탁드립니다.
- 사업 선정 후 상품 및 홈쇼핑사(수행기관)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본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 지표(KPI)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,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참여 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선정 이후,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,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,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기업에게 귀속됩니다.

□ 문의처 : 1899-0309(온판상담소)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앞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희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희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희주점업(56211), 무도유희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